

Q. 벽체 및 바닥 관통부 충전시스템 취득 성적서 상 구성체 두께가 150mm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현장의 벽체 및 바닥 두께가 150mm 이하일 경우 취득한 성적서에 명기된 시공 시스템과 동일하게 시공한다면 취득한 성적서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A. 내화충전 구조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5호(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관리,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에서는 2시간 내화시험인 경우 지지구조(벽 및 바닥)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시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벽체 및 바닥 두께가 150mm 이하인 경우라도 시험성적서 상의 구성(재질, 두께 등)을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표〉 지지구조 구성 조건

내화성능 지지구조 종류	2시간 이상
스터드구조	· 기준 제20조에 의거한 세부운영지침 [별표1]의 경량형강구조벽체 중
경량부재	2시간 이상 인정 내화구조
콘크리트패널 부재	· 기준 제20조에 의거한 세부운영지침 [별표1]의 콘크리트패널벽체 중 2시간 이상 인정 내화구조
콘크리트부재	· 150 mm 두께 콘크리트 또는 경량기포콘크리트

Q. 집합건물에 높은 요율의 업종이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의 요율과는 상관없이 높은 요율의 보험료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우리매장으로 불이 옮겨 불으면 상대방이 배상을 할 것이고, 우리매장에서 불이 나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배상을 하면 될 텐데, 한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보다 높은 요율을 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화재보험의 요율은 건물단위로 직업종별을 판단하여 적용하며, 동일 건물 내에 요율수준이 다른 직업종별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건물 내에 방화구획이 되지 않은 경우 직업종별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물이 소정의 방화구획에 의하여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건물로 하여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2003년도에 지어진 우리 회사는 연기감지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협력사로부터 자동방화셔터를 열, 연기 감지기 교체회로 방식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변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2호)”에 ‘셔터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제2005-232호, 2005.7.2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화문의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68호)은 폐지한다. 다만, 이미 이 기준에 의하여 방화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잔여 인정기간까지 유효하다.

부칙에 따르면, 해당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정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에 강제적으로 바꿔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